

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
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509호
2. 발 의 자 : 이민석 의원(찬성 22명)
3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28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II . 제안이유

- 조례 속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5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인 “심신장애”를 “건강상 이유”로, “일반인”을 “비장애인”으로, “지체부자유자”를 “지체장애인”으로, “정신박약”을 “지적장애”로, “정신이상자”를 “정신장애인”으로 변경함.
- 나.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

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”으로 변경함.

I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5개 조례에서 사용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,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됨.

2.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894개¹⁾ 중 ‘심신장애’ 등 장애인 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순화하는 조례 4개(조문 5건)와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개정²⁾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1개(조문 1건)를 대상으로 총 6건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< 조례안 정비 세부내용 >

조항 번호	정비대상 조례명	해당 조례 조항	현행 조례	개정안
제2조	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	제13조제1호	심신장애	건강상 이유
제3조	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	제5조제1항	일반인	비장애인
제4조	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	제3조제1항 제2호	지체부자유자가	지체장애인이
제5조	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	별표 5 제2호 기관란 제2호	정신질환자·마약중독자·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	정신질환자·마약중독자·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
제5조	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	별표 5 제3호 기관란 제3호	부랑자·결인·정신이상자·요보호여성	부랑자·결인·정신장애인·요보호여성
제6조	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	별표 3 제1호나목제2호 감면대상란 제2호	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
1) 현재 서울시 조례와 규칙을 제공하는 ‘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’에는 조례 894개, 규칙 234개, 훈령 34개, 예규 12개가 등록되어 있음(2025.4.6.기준).

-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‘심신장애’ 라는 용어를 ‘건강상 이유’ 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²⁾에 따라 ‘심신장애’ 라는 용어를 이미 3차례³⁾에 걸쳐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 으로 정비한 바 있음.
- 따라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안 제2호와 같이 ‘심신장애’ 를 ‘건강상 이유’ 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,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감안하여 ‘심신장애’ 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 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< 수정 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~ 5. (생략)	제13조(현행과 같음) 1.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~ 5. (현행과 같음)	제13조(개정안과 같음) 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~ 5. (수정안과 같음)

- 안 제4조는 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」 중 ‘지체부자유자’ 라는 용어를 ‘지체장애인’ 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, ‘지체부자유자’

2) 지난 2016년 2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중 ‘심신장애’라는 용어가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‘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’를 실시(2017)하고, 조례 중에 ‘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’와 관련된 조문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(2018.10.31.).

3) 제286회 임시회(2019.4.), 제287회 정례회(2019.6.), 제320회 임시회(2023.9.)에서 정비하였으며, 특히 제320회 임시회에서는 “심신장애”라는 용어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정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4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였음.

라는 용어는 1989년 12월 30일 「심신장애자복지법」이 「장애인복지법」으로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, 현재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(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)⁴⁾에 따라 ‘지체장애인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임.

- 안 제5조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」 중 ‘정신박약’을 ‘지적장애’로 정비하는 것으로, ‘정신박약’은 기존의 「심신장애자복지법」에서 사용된 용어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1989년 ‘정신지체’로 개정되었다가, 2007년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되면서 ‘지적장애’로 재개정되었다는 점에서, 동 용어의 개선은 법령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.
- 또한 안 제5조에서는 ‘정신이상자’를 ‘정신장애인’으로 개정하고 있는바,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「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」⁵⁾에 따라 ‘정신이상자’와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축소하고,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의학적·법률적 표현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동 용어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음.
-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[별표3] 중 ‘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’을 ‘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, 이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반영한 것임[참고자료1].

4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(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) : 지체장애인은 제1호에 해당하며, 팔·다리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.

5) 국가인권위원회, 「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」, 2009, 229쪽. “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, 이러한 차별은 다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‘정신분열증’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병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명하고, ‘정신병자’, ‘정신이상자’, ‘정신미약자’와 같이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정비하여야 한다”

-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조례 간의 표현을 일원화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.
- 한편 안 제3조는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규정된 용어 중 ‘일반인’ 을 ‘비장애인’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는 동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‘일반인’ 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임.
- 그러나 동 조례 제5조의 조문⁶⁾은 문맥상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계약 대상자인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 유가족 등을 제외한 일반 시민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‘일반인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.
- 따라서 해당 용어를 ‘비장애인’ 으로 개정할 경우 조례의 취지와 문맥을 왜곡하게 되며, ‘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계약 대상자’ 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되어 행정 집행과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안 제3조는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6)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계약)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)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(이하 "장애인 등"이라 한다)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,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, 그 이외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.

< 수정 의견 >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3조(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5조제1항 중 “일반인”을 “비장애인”로 한다.</p> <p>제4조~제6조 (생략)</p>	<p><삭제></p> <p>제3조~제5조 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)</p>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수은	02-2180-8064

[참고자료]

 보건복지부	<h1>보 도 자 료</h1>
배 포 일	2019.6.24.
<p>(장애등급제 폐지)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, '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'과 '심하지 않은 장애인'으로 구분</p> <p>*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,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됨</p>	
<p>□ 보건복지부(장관 : 박능후)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,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.</p>	
<p>○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~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,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.</p>	
<p>○ 이에 정부는 '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'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, 관계부처 시행준비단(단장: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, '18.5월~, 6차),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('17.10월~, 11차)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.</p>	
<p>□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'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'한다는 것이다.</p>	
<p>○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·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,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.</p>	